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 때 : 2010년 9월 27일(월) 11:30

■ 곳 : 광화문 정부청사(교과부) 후문

[주최 단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서울분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경남교육연대/ 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분과/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교육연구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입시폐지대학평화국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농민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신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페다고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학생행동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 차 례 ■

- 사회 : 전누리(교육공동체 나다)

1. [여는말]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경과보고 및 문제점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준비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윤지영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3. [규탄발언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의의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우려를 중심으로
- 최주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경기도 학부모)
4. [규탄발언 2]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정진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5. [규탄발언 3]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박현숙(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대표)
6. [규탄발언 4] 학생인권 유린 비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7. 기자회견문 낭독
8. 퍼포먼스

[자료 1]

앞으로는 '학생인권', 뒤로는 '학생인권 삭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관련 주요 경과와 문제점 분석

■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관련 주요 경과

- 2009.07.30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구성
- 2010.02.10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최종안 발표
- 2010.03.23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입법 예고
- 2010.05.06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구성. 학생인권조례 전국적 제정 추진 결의
- 2010.05.10 :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거행 - 광노현(서울), 김상곤(경기), 김승환(전북), 민병희(강원), 이청연(인천), 장만채(전남), 장희국(광주) 등 교육감 예비후보 협약 체결 참여
- 2010.06.02 : 교육감 선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한 교육감 후보들 6개 지역 당선
- 2010.06.07 : 경기도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보류
- 2010.07.01 : 신임 교육감 취임
- 2010.07.07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발족 및 기념 토론회 개최. 30여개 교육사회단체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본부 결성
- 2010.07.19 : 서울시교육청,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 계기로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발표
- 2010.08.19 : 서울시교육청, 체벌규정 삭제하고 체벌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 개정 지시
- 2010.08.26 : 한국인권재단 주최 제주인권학술회의 참석한 4개 지역 교육감(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제정 필요” 한목소리
- 2010.09.17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재석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

- 2010.09.22 :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 구성 뒤 10월 중 입법 예고 발표
- 2010.09.23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 체벌한 '오장풍 교사' 해임 결정

■ 학생인권조례 '맞붙'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추진 주요 경과

- 2010.07.07 : 교과부,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두발, 체벌 등 학생생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힘. '획일적 조례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혀 학생인권조례 대응용 조치임을 내비침.
- 2010.07.12 : <메디컬투데이>, 교과부가 이례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법 충돌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
- 2010.07.19 : 교과부,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 정책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시교육청 지침이 법령에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받겠다'고 엄포.
- 2010.08.18 : 한국교육개발원, <학생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여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 발표. 강인수 교수(수원대 부총장)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시안을 발표. '교과부가 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으로 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반인권적 개정안이 연구보고서로 발표된 것임.
- 2010.09.09 : <문화일보>, 교과부 관계자 말을 인용, 10월 중 권역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11월말 교과부의 '학생권리신장방안'이 확정될 예정이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0.09.10 : 교과부,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 강인수 교수안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본격화
- 2010.09.19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 5개 교원단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해 '우려되는 사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안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키라고 촉구.

■ 학교규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 삭제 추진 경과

- 2008.11.12 : 교과부, '학교자율화조치'의 후속 조치로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이 개정안에 '학교규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을 폐지하는 조항이 삽입됨.
- 2008.11.13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부
- 2009.01.12 :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 결정
- 2010.07.27 : 법안심사소위 상정
- 2010.09.07 : 법안심사소위 상정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의 주요 문제점

1. 학생인권침해를 법으로 비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개정)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신설)

- 제18조의5(학생의 권리의 한계) ①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 2007년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18조의4 조항은 학생인권 보장을 촉구해온 교육주체들의 오랜 노력이 일궈낸 작은 성과물이었음. 이 조항은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촉구하는 근거 조항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추진의 주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음.

○ 그런데 교과부 추진안은 18조의4에서 학생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비록 예시규정이라고는 하나,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만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학생인권이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에 국한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 이 경우, 학생인권을 구체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는커녕 언급되지 못한 다른 권리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고 자의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만약 학생인권 신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예시 내용을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 게다가 교과부 추진안은 18조의5 조항을 신설, 학생의 권리 행사가 '학교의 교육 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음. '학교의 교육 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잣대로 학생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임. 예를 들어, '선교'를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게 됨. 이 경우, 18조의4 조항에서 보장된 학생인권이 '교육목적'에 대한 해석권을 장악하고 있는 학교에 또다시 '중속'됨으로써 사실상 18조의4항이 삭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 학내 질서를 교란시켰다, 교사의 지도에 불응했다' 등은 그동안 학생들의 인권 보장 목소리를 잠재우고 학생의 정당한 요구를 '징계 대상'으로 삼아온 학교들이 주로 내세운 근거였음. 2004년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경우도, 퇴학 사유가 '교내 질서 혼란, 학교 명예 실추, 교사 지도 불응' 등이었음. 이런 모호하고 자의적인 근거를 들어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학칙 제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법률을 통해 학생인권침해를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참고] 안양 ○○고 학칙이 중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의적 기준들'

- ▲ 집단행동을 선동했거나 모의에 가담한 자
- ▲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한 자
(교직원 반항 비방, 구타하여 교권을 손상시키는 자는 사안에 따라 퇴학)
- ▲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거짓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 이성교제가 청소년 사회윤리에 어긋난 자
- ▲ 무허가 집회를 주도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 ▲ 교내에서 정치 선동을 한 자
-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자
- ▲ 학교장의 허락 없이 정당이나 정치 관련 단체에 가입한 자

2. 학생권리 제한은 법률에! 체벌 금지는 시행령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신설) 제1항 단서

- (제1안) 다만,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지도 방법은 제외한다.
- (제2안)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 알려진 바대로 만약 교과부가 차별 금지를 목표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차별 금지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당연히 '신체의 자유', 또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도 시행령에 차별 관련 규정을 그대로 내버려둔 것은 학생인권 신장이 결코 교과부의 개정 목표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차별처럼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몃살을 겪은 문제는 법률에 명확히 금지하는 것이 온당할 것임.

○ 게다가 시행령 31조의5가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차별한 금지한 (제2안)으로 개정된다면, 기합 등 간접차별은 허용될 수 있음. 이 경우, 간접차별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는 시교육청 지침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불러와 '차별 없는 학교'의 정착을 위해 애써야 할 때 학교들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 또한 차별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하여 기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

3. 학교장에 초헌법적 절대권력 부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신설)

- 제18조의5(학생의 권리의 한계)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개정), 제4항(신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포함한 학생생활지도

(...)

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개정(국회 계류중인 개정안)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교과부 추진안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학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학칙의 외양을 쓰고 학교장의 학생 통제 권력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시행령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정도 규정만으로는 학교장의 독재에 맞서 학생의 권리를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임. 서울시교육청이 2005년 학생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두발규정을 제·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이후에도 이 지침을 따른 학교가 많지 않음. 형식적인 설문조사나 토론회 한번 없이 허수아비 학생회 대표의 의견을 묻는 정도로 '민주적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한 학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임.

○ 반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조항(19조)을 포함시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칙 제·개정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정책결정참여권'(20조)을 통해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권을 보장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46조)을 통해 학생대표의 규정개정 참여 틀을 확보하고, 학생 의견을 민주적·합리적 수렴하도록 다시금 강조하고 있음.

○ 학생인권조례나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경우, 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보장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과 '학칙 인가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 됨. 그런데 교과부가 이미 2008년에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또다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의 권한에서 학칙 인가권을 삭제하고 있음. 이 경우, 반인권적·반민주적 학칙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먹혀들 가능성이 차단되어 버릴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모호한 기준으로 인권과 같은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 자체가 초헌법적, 위법적 발상이며 인권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4.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우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교육자치의 확대가 빚어낸 소중한 결실임. 각 시도에서 제정 또는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물결에 부응하여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역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는 내용이 손질됨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교과부 추진안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다양성,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 신장을 꺾하려는 교육청의 지침이나 조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두발길이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학생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학칙이 이들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음. 이에 반해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청이 지침이나 조례를 통해 학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봉쇄해버리고 있음.

○ 이 경우, 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명분과 학칙의 최

중 제정권을 거머쥔 학교장들이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거부하는 조직적 흐름이 형성될 우려가 매우 큼. 교장연합회 등 일부 교원단체들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전후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끊임없이 주문한 것은 그 전조(前兆)였다고 볼 수 있음.

5. 학생징계 수위 강화를 통한 통제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신설)

- 제18조의6(학생의 지도) ① 교원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징계 이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이 적은 지도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지도 방법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3의2호(신설)

제31조(학생의 징계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3의2. 출석 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개정)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범죄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3. 퇴학보다 가벼운 징계가 잦은 학생
4. 기타 학칙에서 퇴학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신설)(현행 제5항을 제6항으로 함)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대신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 하도록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신설)

제31조의5(학생의 지도) ①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계

2. 학생·보호자와 상담

3. 학교내 자율적인 조정

4.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 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5.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에 근신 조치

6. 학업 점수 감점(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학급교체

8. 기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 중 학급교체 등 일부 지도 방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 교과부 추진안은 전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통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음. 학교 폭력 이외의 사안에까지 출석정지(정학) 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고, 징계전학도 가능케 하였음.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사실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기보다 '학생의 학습권 박탈'과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출석정지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보고된 끝에 사라졌던 징계제도인데도 부활시키고 있으며, 징계전학은 사실상 현재에도 많은 학교가 학생을 추방하는 징계조치로서 활용되고 있음. 전학 조치된 학생은 주변 학교가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오갈 곳이 없어져 사실상 퇴학 조치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

○ 게다가 교과부 추진안은 학업점수 감점까지 새로운 지도 방법으로 추가하고 있음.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나, 그 관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모호함.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에 대해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 점수 감점이라는 비교육적 조치만이 남게 되는 것임. 이 경우, 학교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와 함께 '점수'를 무기로 학생의 모든 행동을 광범위하게 통제되는 살벌한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자료 2>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추진에 대한 검토의견

- 하승수 변호사

1. 만약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활동 보장”, “질서유지”, “타인 권리 보호”를 위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면,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칙으로 곧바로 위임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권리 문제는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의 관할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도 조례를 통해서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학칙으로 다루도록 위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은, ‘학생권리는 조례가 아니라 학칙으로 다룰 사항’이라고 법률에서 명시한 것을 위반하는 셈이 되고, 초·중등교육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권한(학생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조례는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의 제한 여부나 제한범위에 관한 판단을 사실상 학교장에게 백지위임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장”, “질서유지”, “타인 권리 보호”라는 모호한 사유는 학교장의 권한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향의 법개정은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초·중등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차별이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된다고 명시된다면, 차별을 전면 금지하는 시·도의 조례와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혼란과 분쟁이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서 차별을 일부 허용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의 충돌문제도 존재합니다. 협약에 따르면 차별은 전면금지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근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선진화나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을 다루는 법규정으로서는 매우 불명확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는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인권보장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인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개별학교로 위임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생인권 보장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더구나 강제전학과 같은 내용은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5. 이미 학생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존재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퇴행적이고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을 개정한다면 세계적인 흐름에도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만 심각하게 초래될 것입니다.

2010년 9월 26일
변호사 하 승 수

[성 명 서]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는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침묵해오던 교과부가, 학교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던 교과부가, 이제라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나선 것이라면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앞에서는 학생인권을!’, 뒤에서는 ‘학생인권의 삭제!’ 노린 심각한 수준의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격분을 자아낸다. 게다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민선 교육감의 조치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위법령을 개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초중등교육법령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뿐 교과부 차원의 공식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뺌한다. 그러면서도 이미 음으로 양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올 하반기 내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하니 개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과부 추진안은 학생인권 유린을 법으로 비호하고, 학교장의 절대권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바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민주, 반인권 법안이다. 그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부 추진안은 학교가 모호하기 그지없는 이유로 학생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추진안은 ‘학생의 권리 행사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위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18조의5)을 신설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가 무엇인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가침의 인권을 제한할 막대한 권력을 학교에 쥐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의 교육목적이 선교라면,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는 초헌법적, 반인권적 조항을 버젓이 신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활동 보장’과 ‘질서 유지’는 또 어떠한가. 그동안 학교가 학생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면

서 술하게 내세웠던 근거가 바로 교육활동 보장, 질서 유지였다. 학교의 자의(恣意), 아니 학교의 독재를 끝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법으로 학교의 독재를 보장하겠다는 너무도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닌가.

둘째, 교과부 안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학칙 제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장의 통제권력을 절대화하고 있다. 추진안대로라면,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학교장들이 교육청의 지침에 반기를 들거나 집단적 거부 행동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학교규칙의 최종 제정 권한을 학교장에 부여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은 삭제한 또 다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마저 국회에 계류 중이라니 더더욱 충격적이다. 두 법안이 나란히 통과되고 나면, 학칙의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어도 외부의 규제 장치가 전혀 가동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평택에서 일어난 학교장의 교사 체벌 사건에서처럼, 인권과 민주주의와는 담을 쌓은 채 학교장만을 위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보장될 것이다.

셋째, 체벌 관련 내용도 몇몇 교육청이 추진해 온 체벌 금지 조치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높다. 교과부의 의도대로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체벌만 금지될 경우, 체벌을 전면 금지한 교육청 지침이나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 위반 결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체벌 금지를 향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를 부정하고, 교육현장을 다시금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넷째, 교과부 추진안은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징계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출석정지(정학)가 부활했고 징계전학과 학업점수 감점까지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징계 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학생의 회복과 복귀'가 아닌 '교육적 방임과 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업점수 감점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제도(상벌점제, 생활평점제)와 함께 학생의 모든 행동을 '점수'라는 칼날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살벌한 교육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섯째, 교과부 추진안은 학칙 제정에 있어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칙을 정할 때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는 학교현장에서 결코 학생의 참여가 보장될 리 없다. 17일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참여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밀하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령 개악 시도가 학생인권 신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생인권의 삭제'를 노리는 행위라 단언한다.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넘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학생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야비한 꾀수를 부리고 있다. 지금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진중히 검토하고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어긋나는 초중등교육법령의 내용을 삭제, 손질하는 일이어야 마땅하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유린을 법으로 비호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학생인권을 법으로 유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물거품으로 만들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서울분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 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어린이책 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경남교육연대/ 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분과/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교육연구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농민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신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페다고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학생행동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최근 교과부 추진, 초·중등교육법 개정 기초자료

[2010.09.10 협의회 자료]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u>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u>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u> ,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u>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u>
<신설>	제18조의5(학생의 권리의 한계) ①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신설>	제18조의6(학생의 지도) ① 교원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징계 이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이 적은 지도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지도 방법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한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② 삭제 <2005.1.29></p> <p>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u>각 호</u>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포함한 학생생활지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② 삭제 <2005.1.29></p> <p>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u>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의</u>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보호자의 동의와 협력이 있는 <u>경우에 한한다</u>) <p><u>3의2. 출석 정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퇴학처분

<p>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p>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3. 퇴학보다 경한 징계가 잦은 학생 4. 기타 학칙에서 퇴학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p>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징계를 대신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할 수 있다.</p> <p>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1조의5(학생의 지도) ①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안) 다만,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지도 방법은 제외한다.</p> <p>(제2안)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훈계 2. 학생·보호자와 상담 3. 학교내 자율적인 조정 4.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 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	---

	<p>5. <u>점심시간 또는 방과후에 근신 조치</u></p> <p>6. <u>학업 점수 감점(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u></p> <p>7. <u>학급교체</u></p> <p>8. <u>기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u></p>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 중 학급교체 등 일부 지도 방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p>
--	--

국회 계류중인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08.11.12 제출]

※ 관련 없는 조항 개정 내용은 생략

현 행	개 정 안
<p>第6條(指導·監督) 國立學校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公·私立學校는 教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p>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u>공립·사립학교</u>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第7條(獎學指導) <u>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教育監</u>은 學校에 대하여 教育課程 運營 및 教授·學習方法등에 대한 獎學指導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7조(장학지도) <u>교육감</u>은 <u>관할구역의 학교</u>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教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할 수 있다.</p>
<p>第8條(學校規則) ①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法令의 範圍에서 <u>指導·監督機關(國立學校인 경우에는 教育과학기술부장관, 公·私立學校인 경우에는 教育監을 말한다. 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u></p> <p>②學則의 기재사항 및 <u>制定節次</u>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u>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u></p> <p>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u>제·개정 절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